

혼합형 퇴직연금 설정 및 운영계약서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(이 계약에서 "혼합형 제도"라 합니다)를 설정한 _____ (이 계약에서 "사용자"라 합니다)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(이 계약에서 "회사"라 합니다)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체결한 혼합형 제도의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.

제1조(계약의 체결)

사용자는 하나의 회사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을 함께 체결(이 계약에서 "혼합형 계약"이라 합니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혼합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(사용자의 협조 의무)

사용자는 혼합형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3조(혼합형 퇴직연금 규약의 제출)

-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·수리된 혼합형 퇴직연금 규약(이 계약에서 "연금규약"이라 합니다) 및 확인서류를 혼합형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4조(혼합형 제도의 설정 비율)

- ① 혼합형 제도의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.
- ② 제1항의 설정비율의 변경은 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단, 설정비율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의 비율을 이전의 비율보다 작은 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(수수료의 징수)

- ① 회사는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구분하고, 해당 적립금에 각 제도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- ② 회사는 사용자가 혼합형 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(재정검증)

회사는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비율을 한도로 하여 재정검증을 시행합니다.

제7조(준용규정)

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혼합형 제도의 확정급여형·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신탁법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.

계약일	년 월 일		
사용자	기업명		
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	
	대표자	(인)	
회사	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[지점명판]	지점장	(인)